

제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13117(본소), 2019나13124(반소)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13117(본소), 2019나13124(반소)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5454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규범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한대삼

변론 종결2020. 6. 10.

판결 선고2020. 8. 12.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54547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줄여 쓴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줄여 쓴다)에게, 제주시 C 대 261㎡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이하 '별지 도면'이라 줄여 쓴다) 표시 a, b, c, f,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화장실 (ㄱ) 부분, 별지 도면 표시 g, h, k, l, g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창고 (ㄴ) 부분, 별지 도면 표시 m, n, o, p, m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주택 (ㄷ) 부분, 별지 도면 표시 4, 11, 10, 9, 8을 연결하여 축조된 돌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1, 4 내지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를 인도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시 C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1, 4 내지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에 관하여 2016. 3. 2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류호중

판사조병대

별지